

대전지방법원 2024. 11. 13 선고 2023가단2246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7. 24.

판결 선고 2024. 11. 13.

주 문

-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C 지분 전부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2. 10. 1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2. 10. 13. 접수 제70088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]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결과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C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22. 10. 12. 체결된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외 C에게 위 1/2 C 지분 전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2. 10. 13. 접수 제700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와 관련해 피고는 2024. 3. 12. 이 법원에 E위원회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23. 8. 18. 승인(발신)한 소외 C에 대한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서를 제출하였고 그 통지서의 채무별 조정내역에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양수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나, 설령 원고와 소외 C 사이에 그와 같은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가 소외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, 게다가 그와 같은 개인채무조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C가 아닌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제척기간 내에 이 사건 청구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통지서만으로 위 가.항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윤종섭

별지